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646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646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5나1182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B

판결 선고 2016. 5. 2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5나118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거래대금을 인쇄소 운영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계좌 개설에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은 거래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